

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. 4. 4 선고 2017가단78 판결 [건물등 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7. 4. 4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, ②, ③, ④, ⑤, ⑥,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(가)부분 지상 블록조 스투트지붕 단층주택 87㎡'를 철거하고,
나.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,
다. 2016. 12. 16.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11,9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나상훈

별지